인터넷 포털 규제 관련 간담회

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

□ 인터넷산업의 일반적 특징

- ㅇ 소수의 서비스에 대한 쏠림 현상 뚜렷
- 네트워크 규모(가입자 수)에 따라 가치 집중화 현상
- 커뮤니티, 메일, 게임, 사전, 지도, 쇼핑 등 각종 서비스의 1위 사업자가 다르며. 특정 소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쏠림 현상이 뚜렷함
- ㅇ "영원한 1등은 없다"
- 진입장벽이 없고 기술혁신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어 많은 이용자를 단기간에 확보하는 등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음
- 예) 야후코리아 -> DAUM -> NAVER -> 카카오
- o 전환비용(Switching Cost)이 0에 가까움
- 일반적으로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의 경우, '양면시장'의 특성을 갖고 있 어 이용자들의 서비스 전환에 따른 기회비용이 제로에 가까움
- 따라서, 신규서비스 또는 경쟁서비스로 이동이 자유로움
- 0 네트워크 체증의 법칙
- 주요 서비스로 쏠림현상의 주요인은 네트워크 규모가 확대될수록 가치가 증 대되는 인터넷서비스의 특징 때문
- 예) 메신저, SNS, 검색서비스

□ 인터넷서비스시장의 경쟁환경

- ㅇ 인터넷생태계 차원의 경쟁과 상생
- 인터넷산업은 소위 'C-P-N-D'와 같은 다양한 계층을 가지는 생태계 구조로, 각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과 상생이 동시에 필요한 구조
 - Network
 - · Device / OS
 - Application / Service
 - Contents

- '포털'의 경우, 콘텐츠와 이용자를 매개하는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성격을 가지나, 다양한 서비스 별로 동종 서비스와 경쟁하는 한편, CP 등과 상생하는 구조

ㅇ 글로벌 경쟁 체제

- 인터넷은 단일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인터넷서비스의 경우, 국가 단위의 시 장경쟁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함
- 세계적으로 글로벌 서비스 기업(Google, Amazon, eBay 등)이 주요 국가별 서비스 점유율이 높으며, 한국은 예외적 상황
- 외국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환경은 이미 글로벌경 쟁 체제임(ex. Facebook, twitter)
- 글로벌서비스를 포함하여 서비스경쟁력에 따라 이용자점유율이 결정

ㅇ 이용자 점유율, 매출, 시장점유율의 차이

- 일반적인 인터넷서비스의 경우, 광고수익 등을 기반으로 하는 '양면시장'의 특성 때문에, 'Naver 검색점유율'과 같은 특정 서비스의 이용자 점유율은 시장점유율(M/S)로 이해할 수 없음
- 매출의 경우도 광고수익의 경우, 광고주의 광고 선택에 있어서 방송, 신문 등 대체재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서비스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판단할 수 없음
- 전자상거래 및 거래형 콘텐츠의 경우도 오프라인 유통 등 타 업종과 직간접 적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, 가령 '오픈마켓' 업체들간 매출 비교로 시 장점유율을 판단할 수 없음

ㅇ '포털'의 시장지배력 문제

- '포털'은 정보검색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, 인터넷이용의 일종의 '관문'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. 특정 업종이나 기업형태를 의미하 지 않음
- '포털' 기업들은 검색, 이메일, 블로그, 카페, 뉴스, 기타 콘텐츠 등 각각 특화되고 복합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
 - ※ 2009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특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만으로 시장획정을 한 것이 일반적인 시장획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, NHN(네이버)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.
- '포털'의 이용자점유율은 서비스 측면의 혁신과 노력의 결과이며, 모바일 환경 등 시장환경 및 경쟁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

□ '포털'의 공정거래 이슈

- o 콘텐츠 공급자(CP)와의 계약 관계 공정성 이슈
- 뉴스, 음악, 만화, 동영상 등 다수 CP와 직접적인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고 있음. 이에 대해, 계약관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음
- '포털'들은 대부분의 콘텐츠를 직접 CP에게 매입하여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- '포털'들은 콘텐츠 유형별로 표준적인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CP와의 계약에 사용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위의 전수조사를 통해 공 정성을 검증한 바 있음

ㅇ '골목상권' 침해 이슈

- '포털'은 모바일 환경을 포함하여 수십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 이에 대해, 중소 인터넷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존재함
- '인터넷서비스'간의 경쟁은 큰 기업이 만든 서비스가 성공하는 구조가 아 님(ex. 카카오톡). '포털' 또한 벤처정신으로 시장에 도전하는 입장이며, '포털'이 없더라도 중소 인터넷기업은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에 노출되어 있음
- 검색광고, 오픈마켓,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서비스는 '골목상권'의 성장에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음

ㅇ 검색 공정성 이슈

- 네이버 등 주요 '포털'이 검색서비스 이용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, 자사 서비스 중심의 검색결과를 통해 타 콘텐츠 서비스와의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음
- 검색결과 일반은 질의어에 따른 각사 고유의 검색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되는 것으로 임의적인 결과 구성이 어려우며, '바로가기'나 자사 콘텐츠의 노 출 역시 이용자 입장에서 검색퀄리티가 떨어진다면 검색서비스 경쟁력 저 하로 이어지게 되므로 인위적인 경쟁배제가 어려움
- 검색서비스 점유율 1위인 네이버는 최근 검색공정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, 주요 검색서비스는 검색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기 검색알고리즘 개선을 위해 노력중임

ㅇ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현행 규제로 충분히 규율 가능

- 이미 온라인 콘텐츠 거래는 「소비자보호법」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

관한 법률」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상 '이용자의 권리', 민법상 일반원칙(민법 제750조,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 상책임) 등 기존 법에 따라 감독, 규제되고 있음

- 이용자 후생을 감안하거나, 일반적인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제 또한 이미 공정거래법의 규율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, 이용약관 역시 공정위의 표준 약관을 참조하는 방식의 사전 규제와 약관규제법의 사후 규제를 받고 있음
- 만약 상기 이슈를 포함하여 '포털'의 어떠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다면, 현행 규제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상황임

□ '포털'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노력

- ㅇ '포털'의 상생협력 필요성
- '포털'기업은 서비스플랫폼사업자로서 성장모델의 기반을 에코시스템 (Ecosystem)에 두고 있음
- 직접 콘텐츠를 공급하는 CP, 검색대상이 되는 인터넷사이트, 검색광고 등의 광고주와 함께 상생 발전해야 '포털'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임
- 따라서, 각 기업별, 업계 공동, 민관 협력 등 다양한 상생협력 노력을 진행 하고 있음
- o 민·관 협력 상생협력 사업 추진
- 인터넷상생협의체 : 2010년, 주요 '포털' 등 17개 기업/협회/기관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'인터넷상생협의체'를 구성하여, 다양한 상생협력 논의 및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(Alliance Internet-중소 인터넷기업 광고 비즈니스지원, 글로벌K스타트업-스타트업 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, 상생포럼 -대중소기업 상생이슈 논의 등)
- 인터넷 상생협력 발전회의 : 2013년 7월, 미래부와 주요 인터넷기업,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민·관 합동으로 종합적인 상생협력 조직 체계를 구성하여, 상생협력 현황점검 및 정책발전,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 등 진행중
- 인터넷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얼라이언스 : 2013년 7월, 선순환적 인터넷 생 태계 조성을 위해 미래부, 네이버 등 47개 기업/투자·창업기관/협회 등이 참여하여 종합적인 민·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

ㅇ 네이버의 상생협력 노력

- 최근 네이버 관련 이슈 제기에 따라, 기존 상생협력 사업을 대폭 강화하는 종합계획을 발표(2013년 7월)하고 분야별로 추진중임

- '벤처기업상생협의체'를 통해 중소 인터넷기업들과 상생방안을 논의하여, 부동산매물/맛집정보/여행정보 등에 대한 자체서비스 철수, 검색 및 서비스 노출 지원 등 가시적인 상생방안들을 마련
- '네이버 파트너센터'를 CEO직속으로 설치하여 네이버와 협력-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과의 상시적인 상생협력 프로세스 마련
- 중소기업인들과 '소상공인 상생협력기구'를 설립하여, 재단설립/상생방안 연구 등의 모든 사업비용을 네이버가 지원하여 상생협력을 추진하기로 함
- 총1000억원 규모의 '네이버벤처펀드' 및 '네이버컬쳐펀드'를 통해 벤처 창업 및 콘텐츠 창작을 지원하고, 글로벌 진출 지원
- '서비스 영향 평가 제도'와 '표준계약서 제도' 도입 추진중
- o Daum, SK컴즈의 상생협력 노력
- 각사별 상황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상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
-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상생사업 전개(직간접투자, 멘토링, 개발지원 금 지원 등)
- 기술 협력을 통한 다양한 상생사업 전개(오픈API, 매쉬업, 공공DB 구축/개발, 개발리소스 지원,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, 산학연 연계 상생사업 등)
- 광고, 서비스, 마케팅을 통한 상생협력 사업 전개(모바일 광고 플랫폼, 웹툰 상생프로그램, 독립음반사 마케팅지원 등)

□ 법적 규제 신설의 문제점

- ㅇ '산업 위축 인터넷 관련 규제'를 개선하려는 정부정책에 역행
-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"세계 최고의 인터넷생태계 조성"을 채택하였으며,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 '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', '인터넷 신산업 육성', '산업 위축 인터넷 관련 규제 개선'을 제시하였음
- 현재 실효성없이 인터넷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 개선을 위해 미래부에서 규 제개선추진반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, 다양한 소관부처 법률이 존재하 기 때문에 규제개선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
- 인터넷산업계는 '글로벌 스탠다드'에 맞지 않는 과도한 국내 인터넷규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해왔으며, 이는 중소인터넷기업을 포함한업계 전체의 요구임
- ㅇ 규제 신설 시 시장왜곡 및 국내기업 역차별 우려

- '포털' 규제를 목적으로 규제를 신설할 경우, 이는 인터넷서비스(부가통신 서비스) 영역 전체에 적용될 수 밖에 없어 중소인터넷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로막는 시장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
- 또한, 세계적으로도 인터넷서비스 분야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는 만큼 '갈라파고스 규제'의 심화로 국내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
- 더욱이,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해외기업들에 대한 법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에 대한 '역차별'로 인한 국내 인터넷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

0 이용자 후생 저하 우려

- 기업 간의 상생이 소비자(인터넷 이용자) 후생의 증진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, 자유로운 경쟁의 제한과 서비스 혁신의 저해로 인한 소비자 후생의 역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큼
- 가령, 검색 공정성을 이유로 검색서비스의 형태나 알고리즘을 규제한다면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검색서비스가 대동소 이해지는 결과 후발 경쟁주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
- '공정경쟁'의 목적 자체가 기업활동의 증진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에 있으므로 시장활성화에 역행하는 규제는 최소화해야할 것임